

**[□] 오수처리시설
[■] 정화조**

준공검사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5일
신청인	성명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	생년월일 203-83-00918	
	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	(전화번호:)	
설치장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대로 305 (둔촌동 동북중고 앞)	처리방법 부폐탱크방법		
처리용량(m ³ /일) 또는 처리대상인원(00명용) 400인용	시설설치 완료일 201 년 월 사용시작 예정일 201 년 월		
시공자	상호(대표자) 대운환경(주)	등록번호 제 2016-2 호	
	사무실 소재지 서울시 송파구 총민로 52, 제10층 A동 1013호(문정동, 가든파이브웍스)	(전화번호: 02-512-3282)	

「하수도법」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201 년 월 일

신청인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(서명 또는 인)
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재질검사성적서 1부[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 · 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제작(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것을 포함한다)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]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유의사항

-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.
-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.

처리절차

